

## 인도네시아 국립중재위원회(BANI) 중재규칙상 중재절차의 구조

A Review on the Arbitral Proceeding under Rules of Arbitral  
Procedure of the Indonesia National Board of Arbitration (BANI)

김영주\*  
Young-Ju Kim

### 〈목 차〉

- I. 서 론
  - II. 인도네시아 중재법제 개관
  - III. BANI 중재규칙상 중재절차의 구조
  - IV.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과의 비교 검토
  - V. 결 론
- 참고문헌  
Abstract

**주제어** : 인도네시아 중재법, 인도네시아 국립중재위원회, BANI 중재규칙,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중재절차

---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조교수

## I. 서론

최근 세계 각국의 상설중재기관들에서는 중재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면적인 중재제도의 개편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중재지로서의 선호도나 중재절차의 중립성, 나아가 중재규칙의 국제화를 위한 다양한 인적·조직·물적 설비들을 마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중재기관들이 보유한 관련 중재규칙들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제도 개편을 실현하고 있는데, 특히 아시아 지역의 중재기관들이 이러한 움직임에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sup>1)</sup>

우선 말레이시아는 2010년에 이미 쿠알라룸푸르지역중재센터(Kuala Lumpur Regional Centre for Arbitration, 이하 'KLRCA'라 한다) 중재규칙을 개정하여 운용 중에 있고, 홍콩 국제중재센터(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이하 'HKIAC'라 한다)는 2011년에 새로운 중재규칙을 정비하여 시행 중에 있다.

2012년에는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이하 'CIETAC'라 한다)의 중재규칙이 개정되었으며, 같은 해 베트남국제중재센터(Vietnam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이하 'VIAC'라 한다) 역시 중재규칙을 개정하여 국제화를 도모하였다. 한편 가장 국제적인 중재기관이라 평가받고 있는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이하 'SIAC'라 한다)도 지난 2013년 중재규칙을 새롭게 개정하고 SIAC의 지배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한 상황이다. 가장 최근인 2014년에는 일본상사중재협회(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이하 'JCAA'라 한다)의 상사중재규칙도 개정된 상황이다.

이와 같이 주로 ASEAN 신흥국들의 중재제도 활성화 작업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도 이미 1977년부터 '인도네시아 국립중재위원회'(Badan Arbitase Nasional Indonesia, BANI)를 설치하여, 이를 중심으로 자국의 기본적 중재 인프라 정비를 전개하고 있으나,<sup>2)</sup> 역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국가적 규모와 그 교역량에 비추어, 중재제도의 전반적인 법제 개편의 움직임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억 5천만에 육박하는 인구나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의 교역량 규모를 보면,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제8위의 수출대상국(약 116억 달러)이며 동시에 제7위의 투자대상국에 해당한다.<sup>3)</sup> 나아가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는

1) 김태훈·차경자, “대한상사중재원(KCAB) 중재규칙의 최근 개정내용에 관한 고찰”, 『중재연구』, 제22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2, p.4.

2) Simon Greenberg, *et al.*,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n Asia-Pacific Perspectiv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p.37.

3) ASEAN 국가 중에서는 베트남에 이은 2번째의 투자대상국이다(이준원, “한국의 국가별 지역별 수출입 실적”, 『세계경제통계』 2014. 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p..14).

2011년부터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 협상을 벌이고 있는 중요한 무역대상국 관계에 있다.

무역규모가 확대되면 그에 따른 무역분쟁 또는 상사분쟁의 발생빈도 역시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국제적인 상사분쟁에서 실무적으로 특히 중요한 분쟁해결제도가 상사중재제도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교역규모의 증가분에 따른 그 분쟁해결에 대한 논의와 제도 전면에 대한 면밀한 숙지가 필요한 상황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하에 본 논문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중재법제상 실질적인 중재절차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내에서 인도네시아 중재법제상 중재절차의 구조에 관해 연구된 문헌들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과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선행연구라 볼 수 있겠는데, 예컨대, 김상찬(2009)은<sup>4)</sup> 아시아 주요 국가의 ADR 제도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면서 인도네시아의 ADR 제도를 소개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 중재제도 자체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최환용(2007)은<sup>5)</sup> 인도네시아의 전반적인 사법제도 및 소송 외 분쟁해결제도를 개관하고는 있으나, 중재제도 자체에 초점을 맞추었다기 보다는 전반적인 ADR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선행연구를 보면, 인도네시아 중재법규상 중재절차의 실질적 구조에 관한 연구가 아직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상 미흡한 부분으로 파악되는 인도네시아 중재법제상 중재절차의 실질적인 구조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우선 인도네시아 중재제도를 전체적으로 개관하여 보고(Ⅱ), 인도네시아의 BANI 중재규칙을 중심으로 중재절차의 전체적인 구조 및 주요한 특성 등을 검토한다(Ⅲ). 나아가 BANI 중재규칙과 대한상사중재원의 2011년 개정 국제중재규칙과 비교 분석하기로 한다(Ⅳ). 이를 통해 BANI 중재규칙의 취지와 문제점 및 그 실무적 활용상의 시사점 등에 관한 해석론을 피력해 보고자 한다.

4) 김상찬, “ADR제도의 비교법적 연구 - 아시아의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 『중재연구』, 제19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09, pp.67-91.

5) 최환용, “인도네시아의 사법제도와 소송 외 분쟁해결제도”, 『아시아법제연구』, 제7호, 한국법제연구원, 2007, pp.7-31.

## II . 인도네시아 중재제도 개관

### 1. 인도네시아 중재법

인도네시아에서 중재에 관련된 기본 법률로는 1999년 8월 12일 제정된 ‘중재와 대체적 분쟁해결에 관한 1999년 법률 제30호’(Law No. 30 of 1999 concerning Arbitration a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인도네시아중재법’이라 한다)가 있다.<sup>6)</sup> 본래 인도네시아의 중재제도는 1847년 네덜란드 통치 시절 제정된 민사소송법(Reglement op de Burgerlijke Rechtsvordering, BRv.)에 규정되어 있었다.<sup>7)</sup> 다만 이 법률은 중재제도를 포괄하는 법률은 아니었으며,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과 같은 제도들이 인정되지 않고 있었다.<sup>8)</sup>

또한 인도네시아는 1981년 뉴욕협약을 비준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중재법제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제한적으로는 1990년 인도네시아대법원 규칙 제1호에 의하여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관련 규정이 제정기는 하였으나, 포괄적인 의미에서 중재를 규율할 법률체계는 존재하지 않고 있었다.<sup>9)</sup> 다만 1999년 중재법이 제정됨으로써 기존의 중재관련 규정들은 모두 폐지되었다.<sup>10)</sup>

1999년 인도네시아중재법은 전체 9개의 장과 82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UNCITRAL 모델법의 일부 규정들을 수용하고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른 조항들을 담고 있으므로 모델법을 기본적으로 수용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sup>11)</sup>

우선 ① 인도네시아중재법은 UNCITRAL 모델법상의 가처분(injunction) 제도가 없다. 임시적 처분의 범위도 모델법에 비하여 상당히 좁은 편이다. ② 모델법과는 달리 인도네시아중재법상 중재관할의 유무가 중재판정부의 명시적인 권한이 아닌 인도네시아법원에

6) Michael Carl & Dewi Savitri Reni, “ICLG To: International Arbitration 2011,” Soewito Suhardiman Eddymurthy Kardono (SSEK), 2011, p.1.

7) 본 법률은 네덜란드의 인도네시아 식민통치와 관련하여 제정된 네덜란드의 법률인데, 현재까지도 인도네시아의 기본적 민사소송의 절차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만 최근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8) S. Pompe, ed., *Indonesian Law 1949-1989*, Springer, 1992, p.239.

9) 김상찬, “ADR제도의 비교법적 연구 - 아시아의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 『중재연구』, 제19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09, p.72.

10) Timur Sukirno & Hendronoto Soesabdo, *Arbitration in Indonesia*, Hadiputranto, Hadinoto & Partners 2011, p.2.

11) 栗田哲郎 (編), 『アジア国際商事仲裁の實務』, レクシスネクシス・ジャパン, 2014, p.117.

의해 개입될 여지가 많다. ③ 모델법은 당사자들의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증인신문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인도네시아중재법은 당사자들의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증인신문이 열리지 않고 서면심리로 해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모델법이 중재인의 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인도네시아중재법은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⑤ 모델법의 규정에 비해 인도네시아중재법상 중재판정의 취소사유가 제한적 열거되어 있어 적용범위가 상당히 모호하다는 평가가 있다.

보다 구체적인 인도네시아중재법의 특성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언급할 수 있겠다.<sup>12)</sup>

첫째, 중재대상의 적용범위와 관련해서는, 우선 인도네시아중재법 제1조 제1항은 중재를 ‘사법 분쟁’(civil dispute)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이 서면 중재합의에 의해 일반적 법원이 아닌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제도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상사적 성질’(commercial nature)을 갖는 분쟁에 한하여 그 적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우호적인 해결(amicable settlement)을 기대할 수 없는 일반적 법집행에 의한 분쟁은 중재로써 해결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인도네시아중재법 제5조).

둘째, 중재인의 자격요건에 대해 구체적인 조항을 두고 있는데, ① 우선 당사자가 지명 또는 선임한 중재인은 법적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것, ② 최소한 35세 이상일 것, ③ 분쟁당사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지 않을 것, ④ 중재판정을 내림에 있어 어떠한 금전 또는 다른 대가가 없어야 할 것, ⑤ 분쟁과 관련된 해당 분야에서 최소 15년 이상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인도네시아중재법 제12조 제1항).

셋째, 인도네시아중재법상 중재판정은 ① 중공판정과 ② 조건부판정의 두 가지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조건부 판정의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신청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중공판정은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후 18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만약 당사자의 동의가 있다면 이를 연장할 수 있다(인도네시아중재법 제48조).

넷째, 인도네시아중재법상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절차는 상당히 독특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sup>13)</sup>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르는데, 우선 ① 해당 외국중재판정을 ‘자카르타 중앙지방법원’(the Central Jakarta District Court)에 등록하여야 한다(인도네시아중재법 제67조 제1항). 실무적으로는 등록절차상 해당 외국중재판정의 중재판정부로부터 위임장을 취득하여 법원에 제출할 것을 요하고 있다. ②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신청인은 자카르타 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중재판정집행명령’(exequatur)을 받아야 한다(인도네시아중재법 제66조 (d)).<sup>14)</sup> 만약 자카르타 중앙지방법원이 중재판정집행명령을 거부한 경우라면 집행신청인은

12) Karen Mills & Ilman F. Rakhmat, *Arbitration Guide: Indonesia*, IBA Arbitration, 2013. pp.3-4.

13) 인도네시아는 1982년 1월 5일 뉴욕협약을 비준하여, ‘1981년 대통령령 제34호’(Presidential Decree No.34 of 1981)를 시행하고 있다.

14) 여기서 만약 인도네시아 정부가 중재당사자인 경우에는 자카르타 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인도네시아 대법원(Mahkamah Agung Republik Indonesia)으로부터 중재판정집행명령을 받아야 한다(인도네시아중재법 제66조 (e)).

인도네시아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법원은 상소 신청 후, 90일 이내에 중재판정집행명령의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인도네시아중재법 제68조 제2항·제3항).<sup>15)</sup> 마지막으로 ③ 자카르타 중앙지방법원의 중재판정집행명령을 받은 후에는, 인도네시아 민사소송법상의 실질적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집행절차는 관할권이 있는 지방법원에 의한 압류절차 등으로 이루어진다(인도네시아중재법 제69조).

다섯째, 인도네시아중재법제도 중재판정의 취소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독특한 점으로는 외국중재판정의 경우라 하더라도 인도네시아 내에서 직접적인 판정의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국내중재판정이든 외국중재판정이든 불문하고 중재판정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다. 우선 ① 중재판정이 이루어진 후, 제출된 서류에 오류 또는 위조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② 중재판정이 이루어진 후, 중요한 증거들이 일방 당사자에 의해 은폐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③ 중재판정상 일방당사자의 사기가 있었던 경우로 정하고 있다(인도네시아중재법 제70조).

중재판정의 취소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중재판정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지방법원에 서면에 의한 취소신청을 해야 한다(인도네시아중재법 제71조). 관할지방법원장은 취소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중재판정의 취소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관할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을 주장하는 자는 인도네시아 대법원에 이를 상소할 수 있고, 대법원은 상소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인도네시아 중재법 제72조 제4항·제5항).

## 2. 인도네시아 국립중재위원회 및 중재규칙

인도네시아에는 3가지의 중요한 중재기관들이 있다.<sup>16)</sup> 우선 가장 일반적인 중재기관으로는 ‘인도네시아 국립중재위원회’(Badan Arbitrase Nasional Indonesia (Indonesian National Board of Arbitration), 이하 ‘BANI’라 한다)를<sup>17)</sup> 꼽을 수 있다. 한편 이슬람 권역 내의 분쟁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인도네시아 샤리아중재위원회’(Badan Arbitrase Syariah Nasional, BASYARNAS)가 있고, 제한적 관할권을 가진 특별중재기관으로서 자본시장에 관한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설립된 ‘인도네시아 자본시장 중재기관’(Badan Arbitrase Pasar Modal Indonesia, BAPMI)도 있다. 다만 기본적 상사분쟁에 관한 중재기관으로는 BANI가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상설중재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sup>18)</sup>

15) 자카르타 중앙지방법원의 등록부터 중재판정집행명령을 받기까지의 법정기한은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실무적으로는 보통 6개월 정도의 기간을 필요로 한다고 한다(栗田哲郎, 前掲書, p.360).

16) Norton Rose Group, “Arbitration in Asia Pacific - Indonesia”, Norton Rose Group, 2010. 1., p.4.

17) <<http://www.bani-arb.org>> (2014. 9. 25. 최종방문).

18) Karen Mills & Ilman F Rakhmat, op. cit., p.2.

BANI는 1977년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mar Dagang Industri Indonesia)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BANI는 인도네시아 법무부에 등록되어 있는 유일한 상설중재기관으로, 기관적 지위로는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의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으나, 그 운영에 있어서는 독립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다. BANI가 담당하는 분쟁으로는 국내 및 국제상사분쟁으로서, 무역계약, 건설, 보험, 운송, 금융 등이 주를 이룬다.

[표1: BANI의 연도별 중재사건 수] 19)

	총 건수	국내중재	국제중재
2008년	19건	14%	5%
2009년	44건	37%	7%
2010년	41건	34%	7%
2011년	58건	50%	8%
2012년	64건	53%	11%
2013년	59건	47%	12%

한편 BANI 제도 가운데는 ‘구속적 의견’(binding opinion)이라는 제도가 있는 바, 이는 중재판정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쟁점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당해 판단이 구속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sup>20)</sup> 예컨대, 당사자는 계약 중 ① 애매한 조항, ② 새로운 조항의 삽입 또는 ③ 사정변경에 따른 기존 조항의 변경 등이 있을 경우, 이에 관한 해석을 BANI에 요청한다. BANI가 해당 쟁점에 대한 의견을 주면, 당사자들은 이러한 의견에 구속되도록 하는 것이 구속적 의견제도이다.<sup>21)</sup> 만약 당사자들이 BANI 의견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계약위반을 구성하게 된다.

BANI에는 76명의 인도네시아 국적의 중재인과 47명의 외국 국적의 중재인이 중재인 패널로 등록되어 있다.<sup>22)</sup> 보통 중재인 선정은 BANI에 등록된 중재인 패널 중 선임되는 경향이 많다.

구체적인 중재절차는 BANI에서 제정한 ‘중재절차에 관한 규칙’(Rules of Arbitral Procedure of the Indonesia National Board of Arbitration, 이하 ‘BANI 중재규칙’이라 한다)에 의한다. 이는 인도네시아중재법을 기본으로 하여 제정되었으며, ICC 중재규칙을 수용한 2003년 개정판이 현재 운용 중에 있다.<sup>23)</sup> BANI 중재규칙상 독특한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있다.

19) 栗田哲郎, 前掲書, p.118.

20) 최환용, 전개논문, p.22.

21) <[http://www.bani-arb.org/bani\\_main\\_eng.html](http://www.bani-arb.org/bani_main_eng.html)> (2014. 10. 1. 최종방문).

22) <<http://www.baniarbitration.org/arbitrator.php>> (2014. 10. 2. 최종방문).

23) Simon Greenberg, *op. cit.*, p.37.

첫째, BANI 중재규칙상 당사자 쌍방이 중재인 선임에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BANI 위원장은 해당 중재인 후보의 독립성·중립성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중재인 후보의 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BANI 중재규칙 제10조 제6항). 즉, BANI 중재규칙상 당사자들이 선임한 중재인이 BANI 사무국에 의하여 거절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당사자들이 BANI에 등록된 중재인 패널에서 중재인을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BANI 사무국의 재량에 따라 거부될 수 있다.

둘째, BANI 중재에 있어서는 인도네시아어로 절차진행이 될 것을 전제로 한다. BANI 중재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의 별도 합의가 없거나 또는 중재판정부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sup>24)</sup> 영어나 기타 외국어로 절차 진행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인도네시아어로 절차진행을 하여야 한다. 즉, BANI 중재규칙상 인도네시아어 이외의 외국어로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재합의에 해당 외국어를 명시할 것이 필요하다.

셋째, BANI 중재규칙상 중재절차는 원칙적으로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료되어야 하는 바(BANI 중재규칙 제4조 제7항), 실무적으로는 이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실제로 심리절차상 증인신문과 같은 경우, 일반적인 인도네시아 재판과정과 비슷한 신문기일, 예컨대, 1~2주에 1회의 증인신문 절차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점이 중재판정을 상당히 지연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한다.<sup>25)</sup>

넷째,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 법계를 계수한 대륙법계 국가로서, 영미법상의 증거개시절차인 ‘디스커버리’(discovery) 절차를 채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영미법계의 재판절차 또는 중재절차 과정에서 인정되는 광범위한 문서제출절차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BANI 중재는 당사자들이 관련성 있는 문서 중 유리한 문서만을 제출하면 되는 것이 원칙이 될 것이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서의 중재절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문제점들도 제기되고 있다. ① 중재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비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보다는 저렴하다고는 하나, 대다수의 인도네시아인에게는 부담하기 어려운 정도이어서 중재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② 중재인 자격과 의사를 갖춘 사람의 수가 적다고 한다. ③ 앞서 언급한 3개의 중재기관 모두 수도인 자카르타 또는 수라바야(Surabaya)에만 사무실을 두고 있어 지방에 있는 당사자들에게는 막대한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그밖에 ④ 인도네시아에서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절차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도 있다. 다만 이에 관하여는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sup>26)</sup>

24) 예컨대, ① 당사자가 외국인, ② 중재인이 외국인, ③ 분쟁이 된 계약이 외국어 등의 사항들이 될 것이다.

25) 栗田哲郎, 前掲書, p.119.

26) 김·장 법률사무소, 『APEC 개발도상국 법제지원을 위한 인도네시아 계약분쟁해결절차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2011, p.31.



### Ⅲ. BANI 중재규칙상 중재절차의 구조

#### 1. 중재절차의 개시

##### (1) 중재신청

기관중재의 경우 소송과 유사하게 신청인에게 중재기관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중재가 개시된다.<sup>27)</sup> BANI 중재규칙도 신청인의 중재신청(the petition for arbitration)의 제출 및 등록(the registration and filing)에 의하여 중재절차가 개시됨을 명시한다(BANI 중재규칙 제6조 제1항). 구체적인 중재개시의 방법이나 시기는 각각의 기관중재 규칙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중재신청에 의해 중재절차가 개시됨에는 이문이 없다.<sup>28)</sup>

BANI 중재규칙상 중재대상이 되는 분쟁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상사분쟁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인도네시아중재법 제5조 (i)에 따르면, 중재합의의 대상으로 ‘상사적 분쟁’(commercial disputes)만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략 매매, 리스, 보험 등의 상사분쟁들이 BANI 중재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sup>29)</sup>

중재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인이 BANI에 중재요청서(statement of claim)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요청서에는, ① 각 중재 당사자들의 성명 및 주소, ② 중재신청의 원인이 되는 분쟁의 사실, ③ 해당 분쟁의 쟁점, ④ 청구액 등의 구제방안 등이 기대되어야 한다. BANI는 이러한 중재요청서를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BANI 중재규칙 제16조 제1항·제2항).

신청인은 중재신청시 중재인을 지명할 수 있고 또는 BANI 위원장(the Chairman of the Board of BANI)에게 중재인 선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BANI 중재규칙 제6조 제2항). 또한 중재절차의 개시를 위하여 신청인은 중재신청과 동시에 BANI에 중재신청 등록비와 관리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중재절차비용의 예납이 이행되지 않으면 중재절차는 개시되지 않는다(BANI 중재규칙 제6조 제4항).

##### (2) 중재신청의 등록

BANI 중재규칙상 신청인이 BANI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비용을 납부하였다면 BANI 사무국은 해당 중재신청을 등록하게 된다(BANI 중재규칙 제7조 제1항). BANI 이

27) 석광현, 『국제민사소송법』, 박영사, 2012, p.525.

28) 김갑유, 『중재실무강의』, 박영사, 2012, p.178.

29) Karen Mills & Ilman F Rakhmat, *op. cit.*, p.2.

사회는 등록된 중재신청상 중재합의 또는 중재조항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BANI 중재규칙 제7조 제2항).

이렇게 중재절차의 개시 과정에서 중재기관의 이사회가 중재합의의 유효성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다른 중재기관의 중재규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점이라 할 수 있겠다.

### (3) 답변서 및 반대신청

BANI 사무국은 신청인의 중재신청이 등록되면, 중재신청서의 등본 및 관련 서류를 피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은 이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statement of defense)를 BANI에 제출하여야 한다(BANI 중재규칙 제17조 제1항). 피신청인은 답변서 제출시 중재인을 지명할 수 있고 또는 BANI 위원장으로 하여금 중재인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피신청인이 중재인을 지명하지 않으면 피신청인의 중재인 지명권한은 BANI 위원장에게 자동적으로 이전된다. 또한 피신청인에 의한 답변서 제출 및 중재인 지명 기한은 연장이 허용되나 그 기간은 14일을 초과할 수 없다(BANI 중재규칙 제7조 제3항·제4항).

BANI 중재규칙상 특이한 점으로는, 신청인의 중재신청에 대해 피신청인의 반대신청(counterclaim) 제기기한을 최초 심리일까지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상적인 국제중재에서 반대신청은 중재신청서에 대한 답변과 동시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sup>30)</sup> 그러나 BANI 중재규칙의 경우에는 ① 답변서 제출과 동시에 반대신청을 제기하든가 ② 늦어도 최초의 심리기일 전까지 반대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BANI 중재규칙 제17조 제1항).

## 2. 중재판정부의 구성

### (1) 중재인의 수

국제적인 상사중재절차 실무에서도 중재절차가 개시된 이후 중재판정부의 구성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보통 중재판정부는 1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단독중재와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3인 중재의 두 가지 유형이다. BANI 중재규칙의 경우에도 단독중재와 3인 중재의 중재판정부 구성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당사자들이 중재인의 수에 대해 합의가 없으면, BANI 위원장이 해당 분쟁의 성질, 복잡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BANI 중재규칙 제10조 제4항), 이는 상당수의 중재규칙들이 중재인의 수에 관한 원칙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sup>31)</sup>

30) 김갑유, 전제서, p.187.

## (2) 중재인 자격

중재인의 자격요건에 대해 BANI 중재규칙은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상정해 두고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중재법에 따른 것인데,<sup>32)</sup> ① 당사자가 지명 또는 선임한 중재인은 법적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것, ② 최소한 35세 이상일 것, ③ 분쟁당사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지 않을 것, ④ 중재판정을 내림에 있어 어떠한 금전 또는 다른 대가가 없어야 할 것, ⑤ 분쟁과 관련된 해당 분야에서 최소 15년 이상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 ⑥ 판사, 검사, 법원서기 및 기타 국가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지 않을 것이다(BANI 중재규칙 제9조 제3항).

또한 선임된 중재인은 독립성 보증(statement of independence)에 서명하여야 한다(BANI 중재규칙 제9조 제4항).

## (3) 중재인의 선임

BANI는 자체적인 중재인 패널(중재인 후보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인 패널에 등록된 자 중에서 중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BANI 중재규칙 제9조 제1항). 구체적인 중재인 선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독중재의 경우, 신청인은 중재신청 시 중재인을 지명하고, 피신청인이 이를 수락하면 BANI 위원장의 최종 승인 하에 중재인이 선정된다. 만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단독 중재인의 선정을 합의하지 못하면 BANI 위원장이 즉시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쌍방은 해당 중재인의 독립성·공정성 이외의 사유로 이러한 선정을 거부하거나 이의제기할 수 없다.

만약 당사자들이 단독중재인을 수락하지 않는다면, BANI 위원장은 분쟁 사안의 성격, 복잡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3인 중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한에서 당사자들에게 7일 이내에 각각의 중재인들을 지명하도록 하게 한다(BANI 중재규칙 제10조 제1항).

둘째, 3인 중재의 경우, 당사자 쌍방이 각각의 중재인을 지명하면 BANI 위원장이 의장 중재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의장중재인의 선임은 BANI 중재인 패널로부터 선정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BANI 중재규칙 제10조 제3항).

중요한 문제는 BANI 중재규칙상 중재인 선정의 최종권한을 당사자가 아닌 BANI 위원장이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sup>33)</sup> 예컨대, 당사자 쌍방이 중재인 선임에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BANI 위원장은 해당 중재인 후보의 독립성·중립성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중재인 후보의 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BANI 중재규칙 제10조 제6항). 즉, 당사자들이 선임한 중재인이 BANI 사무국에 의하

31) Michael J. Moser, ed., *Arbitration in Asia*, 2nd Ed., Juris Pub., 2008, p.307.

32) *Id.* p.306.

33) Karen Mills & Ilman F Rakhmat, *op. cit.*, p.7.

여 거절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당사자들이 BANI에 등록된 중재인 패널에서 중재인을 선임하였다고 하였더라도 BANI 사무국의 재량에 따라 거부될 수 있다.

또한 BANI 중재규칙상 분쟁 실체의 준거법이 인도네시아법으로 지정된 경우, 인도네시아에 거주 중이며 인도네시아법에 정통한 최소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다(BANI 중재규칙 제10조 제5항).

#### (4) 중재인의 기피

중재인은 판정뿐만 아니라 절차진행에서도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며, 중재당사자들을 비롯하여 중재판정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당사자들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만 한다. BANI 중재규칙도 중재인의 기피사유로서 이러한 공정성과 독립성의 문제를 들고 있다.<sup>34)</sup> 즉, 당사자가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의심을 살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재인의 선정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또는 그 사유를 안날로부터 14일 이내에 BANI에 서면으로써 해당 중재인의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BANI 중재규칙 제11조 제1항).

중재인의 기피신청이 제기되면, BANI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중재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만약 해당 중재인이 사임하거나 타방 당사자가 기피신청을 수락하게 되면, 새로운 중재인으로 교체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타방 당사자가 중재인의 기피신청을 동의하지 않고 BANI 위원장이 해당 기피의 사유와 근거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재인은 기피되지 않고 중재인 역할을 지속할 수 있다(BANI 중재규칙 제11조 제3항).

### 3. 중재절차의 언어

일반적으로 중재절차의 언어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합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중재판정부가 계약 언어를 비롯한 모든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여 중재언어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보통이다.<sup>35)</sup> 그러나 BANI 중재규칙에서는, 당사자들의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인도네시아어를 중재절차의 언어로 지정하고 있다(BANI 중재규칙 제14조 제1항).

만약 서증이나 물증과 관련한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중재판정부의 재량에 따라 인도네시아어의 번역문을 첨부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34) Norton Rose Group, *op. cit.*, p.8.

35) 석광현, 전제서, p.526.

#### 4. 심리절차

중재신청과 그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지면 당사자들은 주장 및 입증방법이 포함된 주장서면을 제출하게 된다.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도 다른 대륙법계 국가에서와 같이 심리기일 전에 주장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중재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BANI 중재규칙에서는 통상적으로 심리기일 전에 주장서면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BANI 중재규칙 제16조·제17조).<sup>36)</sup> 즉, 본격적인 심리절차가 진행되면 당사자들의 청구 이유 변경이나 추가청구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이를 위해서는 중재판정부의 허락이 필요하다(BANI 중재규칙 제22조 제1항·제2항).

주장서면의 제출 및 교환이 이루어지면, 중재판정부는 재량으로 구술심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서면심리만으로 충분한 지에 관하여 판단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인도네시아중재법 및 BANI 중재규칙상 구술심리 개최에 대한 강제규정은 없으나, 실무적으로는 구술심리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sup>37)</sup> 또한 BANI 중재규칙의 경우, 중재판정부는 본격적인 심리절차에 앞서 절차문제, 일정조정, 구술심리 및 서면심리의 결정 등을 선결하기 위해 절차심리(procedural hearing)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다.<sup>38)</sup>

문서제출절차와 관련하여, 국제상사분쟁에서 자주 활용되는 이른바 영미법계의 증거개시절차인 디스커버리(discovery) 절차는 BANI 중재규칙상 인정되지 않는다.<sup>39)</sup>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법을 그대로 수용한 민사소송법제를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대륙법계 국가이므로, 중재절차 역시 영미식의 증거개시제도가 활용될 여지는 크지 않다. 대륙법계 국가의 경우, 소송과정에서 관련성 있는 문서 중 유리한 문서만을 제출하면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BANI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영미법계 법원이나 중재절차에서 인정되는 광범위한 문서제출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sup>40)</sup>

국제중재의 경우에는 소송과는 달리 심리기일(hearing)을 단 한 번 여는 것이 보통인데,<sup>41)</sup> BANI 규칙은 본격적인 심리기일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서면에 의한 중재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경우가 아닌 한, 당사자의 요청이나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분쟁 본안에 관한 서면 증거 제출 및 구두변론을 위한 심리절차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BANI 중재규칙상 심리기일의 절차와 방식을 정하는 것은 중재판정부의 재량이며,<sup>42)</sup> 심

36) Karen Mills & Ilman F Rakhmat, *op. cit.*, p.10.

37) Michael J. Moser, *op. cit.*, p.317.

38) Michael Pryles, *ed.*, *Dispute Resolution in Asia*, Kluwer Law International; 3rd Ed., 2006, p.191.

39) *Id.* p.195.

40) 국제중재 실무에서는 문서제출과 관련하여 국제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가 정한 ‘국제상사중재에 있어서의 채증에 관한 국제변호사협회규칙’(IBA Rules on the Taking of Evidence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이하 ‘IBA 증거규칙’이라 한다)을 지침으로 삼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중재에서는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한다(Karen Mills & Ilman F Rakhmat, *op. cit.*, p.11).

41) 김갑유, 전제서, p.213.

리기일에는 절차적인 미결문제를 다룬 후, 당사자 쌍방의 진술, 서증이나 물증의 제출, 증인신문 등이 선별적으로 진행된다.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각 증거에 대해 관련성, 밀접성, 중요성 등을 결정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사실관계 증인에 관한 증인신문을 행하거나 그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교차진술(cross examination)을 허용하여야 한다(BANI 중재규칙 제23조 제3항·제4항·제5항). 다만 중재판정부가 증인소환을 강제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sup>43)</sup>

전문가 증인진술 및 증인신문 방식에 관하여는 BANI 규칙상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인도네시아중재법 제50조는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가 없더라도 중재판정부가 전문가 증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중재판정부가 직접 전문가 증인을 지정하고 신문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sup>44)</sup> 토론식 신문(witness conferencing)의 경우, 인도네시아중재법과 BANI 중재규칙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금지되지는 않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이용되기도 한다.<sup>45)</sup>

중재판정부는 심리기일 이후 각 당사자가 주장 및 증거를 모두 제출한 것으로 판단하면 심리절차의 종결을 선언한다(BANI 중재규칙 제23조 제7항).

한편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통지와 충분한 준비시간을 받고도 심리절차에 불출석하거나 서면변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재절차의 종료가 문제가 되는데, BANI 중재규칙은 다음과 같은 중재판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 우선 ①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첫 심리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서면변론을 하지 않은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신청의 철회를 이유로 중재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 그러나 ② 피신청인이 중재신청을 수령한 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심리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라면,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제출된 증거만을 기초로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BANI 중재규칙 제21조).

## 5. 중재판정

BANI 중재규칙상 신청인은 중재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중재신청을 철회함으로써 중재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 다만 피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고 중재판정부가 피신청인에게 분쟁의 최종적 해결을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재절차는 계속 진행된다(BANI 중재규칙 제24조 제1항).

심리절차가 종료되면 중재판정부의 중재판정이 이루어지는 바, 그 판정원칙은 다수결에

42) 인도네시아중재법 제48조는 중재판정부가 증인신문 방법에 관한 재량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43) Karen Mills & Ilman F Rakhmat, *op. cit.*, p.11.

44) *Id.* p.12.

45) 토론식 신문이란 대질신문처럼 여러 명의 증인 또는 여러 명의 전문가를 동시에 또는 번갈아 가면서 신문하는 방식으로, 여러 명이 함께 신문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목욕탕 신문’(hot tubbing)이라고도 한다(김갑유, 전제서, p.215).

의하여야 한다(BANI 중재규칙 제27조). 중재판정문에는 인도네시아중재법 제54조 및 BANI 중재규칙 제29조·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sup>46)</sup> 우선 ① 중재판정문의 서두에 ‘신의 믿음에 기반한 정의를 위하여’(Demi Keadilan Berdasarkan Ketuhanan Yang Maha Esa)라는 문구가 기재되어야 하고, ② 중재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③ 분쟁의 쟁점 요약, ④ 각 당사자들의 지위, ⑤ 중재인의 성명 및 주소, ⑥ 중재판정부에 의한 판정의 결론, ⑦ 각 쟁점에 관한 중재인들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⑧ 중재판정 주문, ⑨ 중재판정일 및 장소, ⑩ 중재인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재판정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규정들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당사자들의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종국판정(final award)은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후 180일 이내 및 최후 심리기일(중재절차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중재판정부의 재량으로 연장될 수 있다(BANI 중재규칙 제25조).

둘째, 중재판정부는 종국판정 이외에도 임시적 처분(interim measure), 중간판정(interlocutory award), 부분판정(partial award)을 내릴 수 있다(BANI 중재규칙 제26조).

셋째, 최종적인 중재판정은 당사자들을 구속하는데, 중재판정의 집행을 위해서는 관할법원에서의 등록절차(registration)가 이루어져야 한다(BANI 중재규칙 제33조). 외국중재판정의 경우에는 자카르타 중앙지방법원(the Central Jakarta District Court)에 등록하여야 한다.<sup>47)</sup>

다섯째, 중재판정에 오류가 있거나 특정 쟁점에 관하여 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중재판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BANI에 중재판정의 정정·추가판정 등을 요청하여야 한다(BANI 중재규칙 제34조).

#### IV.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과의 비교 검토

최근 우리나라도 아시아 지역의 국제중재 허브를 지향하며, 지난 2013년 5월 서울국제중재센터를 개소하였다. 이를 계기로 전반적인 중재법제의 개혁 및 대한상사중재원(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이하 ‘KCAB’라 한다) 중재규칙의 현대화·국제화를 도모하고 있다. 관건은 KCAB 국제중재규칙이 얼마만큼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냐이다.

KCAB는 지난 2007년에 45개의 조문과 부칙 등으로 구성된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the Rule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for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이하 ‘KCAB 국제중재규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이후, KCAB는 기존 국제중재규칙의

46) Karen Mills & Ilman F Rakhmat, *op. cit.*, p.13.

47) 이후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신청인은 자카르타 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중재판정집행명령’(exequatur)을 받아야 한다(인도네시아중재법 제67조 제1항·제66조 (d)).

미비점을 보완하고, 또한 동아시아 중재허브 육성에 대한 정책적 일환의 하나로, 기존 국제중재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2011년 개정작업을 진행하였다.<sup>48)</sup>

이하에서는 2011년 개정된 KCAB 국제중재규칙과 앞서 살펴본 BANI 중재규칙을 비교 검토해보기로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ICC 중재규칙 등을 비롯한 다른 상설·비상설 중재기관의 중재규칙들과도 함께 비교하기로 한다.

## 1. 중재절차의 개시

KCAB 국제중재규칙의 경우에도 중재절차는 신청인의 중재신청서 제출에 의하여 개시된다. 보다 정확하게는 중재신청서가 사무국에 접수된 날 중재절차가 개시된다(KCAB 국제중재규칙 제8조 제2항). BANI 중재규칙의 경우, 신청인이 중재신청서를 제출하고 BANI 사무국이 이를 등록함으로써 중재절차가 개시되는데 이러한 점과는 차이가 있다. KCAB 국제중재규칙상 중재신청에 대한 피신청인의 답변서는 신청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되도록 하고 있다(KCAB 국제중재규칙 제9조 제1항). BANI 중재규칙 역시 이와 같은 30일 이내의 답변서 제출기한을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BANI 중재규칙의 경우, 최초의 심리기일 전까지 반대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반대신청을 심리기일 이전까지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면, 중재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후, 또는 심리기일 직전에 반대신청이 제기되어 중재절차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KCAB 국제중재규칙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의 반대신청은 답변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다(KCAB 국제중재규칙 제9조 제4항).

ICC 중재규칙의 경우에도 피신청인은 답변서 제출과 함께 반대신청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으며(ICC 중재규칙 제5조 제5항), 중재판정부가 이를 정리하여 중재위탁요지서(Terms of Reference)를 작성한 이후에는 중재판정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반대신청이 허용되도록 하고 있다(ICC 중재규칙 제23조 제4항). HKIAC 중재규칙 역시 가능하면 답변서 제출과 동시에 반대신청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으며(HKIAC 중재규칙 제5조 제4항), VIAC 중재규칙 또한 답변서 제출과 동시에 반대신청을 제기하도록 요구한다(VIAC 중재규칙 제9조 제1항).

48) 개정 KCAB 국제중재규칙은 2011년 6월 29일자로 대법원의 승인을 얻어, 2011년 9월 1일부터 발효되어 시행 중에 있다.



## 2. 중재판정부의 구성

KCAB 국제중재규칙의 경우에도, 중재절차가 개시되면 중재인 선정절차가 진행된다. 중재판정부의 구성과 관련하여, KCAB 국제중재규칙과 BANI 중재규칙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중재인 수에 관하여, KCAB 국제중재규칙은 단독중재에 의할 것을 원칙으로 규정한다.<sup>49)</sup> 다만 당사자들이 3인 중재인의 심리로 합의하거나 사무국이 당사자 의사, 분쟁금액, 분쟁의 복잡성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3인 중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3인 중재절차로 결정할 수 있다(KCAB 국제중재규칙 제11조).

반면에 BANI 중재규칙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중재인 수에 대해 합의가 없으면, BANI 위원장이 해당 분쟁의 성질, 복잡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중재인 수에 관한 원칙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인 점이다. BANI 규칙과 유사한 조항을 두고 있는 중재규칙으로는 HKIAC 중재규칙인데,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 HKIAC 이사회가 중재인 수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HKIAC 중재규칙 제6조 제1항).<sup>50)</sup>

둘째, 중재인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KCAB 국제중재규칙은 특별한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BANI 중재규칙은 중재인의 자격요건으로, ① 법적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것, ② 최소한 35세 이상일 것, ③ 분쟁당사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지 않을 것, ④ 중재판정을 내림에 있어 어떠한 금전 또는 다른 대가가 없어야 할 것, ⑤ 분쟁과 관련된 해당 분야에서 최소 15년 이상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 ⑥ 판사, 검사, 법원서기 및 기타 국가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셋째, 중재인 선임절차와 관련하여, KCAB 국제중재규칙은, ① 당사자들이 단독중재에 의할 것을 합의한 경우, 중재신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단독중재인을 선정하도록 한다. 만약 당사자들이 위와 같이 정해진 기간 또는 사무국이 연장을 허용한 기간

49) 반면에 우리나라 중재법 제11조는 당사자 간 합의가 없으면 3인 중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KCAB 국제중재규칙은 중재비용의 증가를 우려하여 단독중재를 원칙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바, 국제중재 실무를 반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점은 있으나 중재법상의 원칙과 달리 규정할 합리적인 근거에 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한다(석광현, “대한상사중재원의 2007년 국제중재규칙의 주요내용과 그에 대한 평가”, 『법학연구』, 제49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p.74).

50) 그러나 대부분의 중재규칙에서는 중재인 수에 관한 원칙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 예컨대, ICC 중재규칙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가 없으면 단독중재인에 의한 중재로 추정되도록 규정하며(ICC 중재규칙 제12조 제1항·제2항), SIAC 중재규칙도 단독중재가 원칙이다(SIAC 중재규칙 제6조 제1항). JCAA 중재규칙 역시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 단독중재로 정하고 있다(JCAA 중재규칙 제26조 제1항). 반면 UNCITRAL 중재규칙이나 CIETAC 중재규칙 및 VIAC 중재규칙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라면 3인 중재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UNCITRAL 중재규칙 제7조 제1항; CIETAC 중재규칙 제23조 제2항; VIAC 중재규칙 제10조 제2항). 한편 KLRCA 중재규칙은 국제중재의 경우에는 3인 중재, 국내중재의 경우에는 단독중재를 원칙으로 규정한다(KLRCA 중재규칙 제4조 제4항).

내에 합동으로 단독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KCAB 사무국이 단독중재인 선정의 재량권을 가진다(KCAB 국제중재규칙 제12조 제1항). ② 당사자들이 3인 중재에 의할 것을 합의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들은 각 1인씩의 중재인을 선정하고,<sup>51)</sup> 이렇게 중재인 2인이 선정되면 2인의 중재인이 합의하여 제3의 중재인을 선정하고 그가 중재판정부의 의장이 된다. 만약 두 번째 중재인의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장으로 활동할 제3의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하면 사무국이 이를 선정한다(KCAB 국제중재규칙 제12조 제2항).

이와 관련하여 BANI 중재규칙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중재인 패널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즉,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BANI에 등록된 중재인 패널 중 중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강제하지 않는 KCAB 국제중재규칙과는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중재규칙에서도 중재인 패널로부터의 선임을 강제하지 않는다. 다만 CIETAC 중재규칙의 경우가 BANI 중재규칙과 유사한 조항을 두고 있을 뿐이다.<sup>52)</sup>

중재인 선정절차와 관련하여 BANI 중재규칙의 가장 독특한 점으로는 중재인 선정의 최종권한을 당사자가 아닌 BANI 위원장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당사자 쌍방이 중재인 선임에 합의하였더라도, BANI 위원장은 해당 중재인 후보의 독립성이나 중립성 또는 중재인 후보의 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BANI 위원장의 중재인 선정에 관한 독점적인 권한이 인정되며,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 중재인 선정이 거부될 수 있다.<sup>53)</sup>

또한 BANI 중재규칙상 분쟁 실체의 준거법이 인도네시아법으로 지정된 경우, 인도네시아에 거주 중이며 인도네시아법에 정통한 최소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것도, 이러한 제한 규정이 없는 KCAB 국제중재규칙과는 다르다 할 것이다.

넷째, 중재인 기피절차와 관련하여, KCAB 국제중재규칙은, 기피신청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일방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사실을 통지 받은 날 또는 해당 당사자가 기피의 원인이 된 사유와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KCAB 국제중재규칙 제13조 제3항). 또한 기피의 대상이 된 중재인, 상대방 당사자 및 중재판정부의 다른 구성원들은 기피신청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피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밝힐 수 있다(KCAB 국제중재규칙 제13조 제4항).

BANI 중재규칙의 경우, 당사자가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의심을 살만한 사유가

- 
- 51) 당사자들은 사무국으로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사무국이 허용한 연장기간 내에 각각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한다. 일방 당사자가 이 기한 내에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KCAB 사무국이 이를 선정한다.
- 52) CIETAC 중재규칙에 따르면, 당사자들은 CIETAC가 작성한 중재인명부 중에서 중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만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중재인명부 외에서 중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CIETAC 사무국의 확인을 요하고 있다(CIETAC 중재규칙 제24조 제1항·제2항).
- 53) 이는 당사자들이 BANI에 등록된 중재인 패널에서 중재인을 선임하였다고 하였더라도, BANI 위원장의 재량에 따라 거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재인의 선정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또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BANI에 해당 중재인의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15일의 기피신청 기한을 규정한 KCAB 국제중재규칙과는 달리 BANI 중재규칙은 14일의 기피신청 기한을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소하기는 하나 기간적 차이가 있다.

### 3. 중재절차의 언어

KCAB 국제중재규칙의 경우, 당사자간에 합의가 없을 때 중재판정부는 계약언어를 비롯한 모든 관련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여 중재언어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KCAB 국제중재규칙 제24조). 그러나 BANI 중재규칙에 따르면 당사자들의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인도네시아어를 중재절차의 언어로 지정하고 있다. 이는 특별한 언어지정 규정이 없는 KCAB 국제중재규칙과는 다른 점이다.

이처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중재절차의 언어를 지정한 경우는 상당히 드문 예이다. 가장 유사한 중재규칙으로는 VIAC 중재규칙이 있는 바, VIAC 중재의 경우 중재절차의 언어로서 외국적 요소(foreign element)가 없는 경우 베트남어로 진행될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만약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라면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에 사용할 언어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VIAC 중재규칙 제21조 제1항).

그러나 상당수의 중재규칙들은 이러한 언어지정 규정을 두지 않고, 대부분 중재판정부나 중재기관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한다.<sup>54)</sup>

### 4. 예비절차

KCAB 국제중재규칙은 예비절차와 관련하여 절차일정표<sup>55)</sup>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중재판정부는 절차일정표 작성에도 불구하고, 후속 절차를 준비하고 그 일정을 정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답변서 제출 이후에 준비회의를 열 수 있다(KCAB 국제중재규칙 제15조 제2항). BANI 중재규칙의 경우에도 본격적인 심리절차에 앞서 절차문제, 일정조정, 구술 심리 및 서면심리의 결정 등을 위한 절차심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유사한 점이다.

다만 KCAB 국제중재규칙과 BANI 중재규칙 모두 예비절차를 중재판정부의 재량에 맡

54)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한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의 언어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중재규칙들로는 ICC 중재규칙 제20조, HKIAC 중재규칙 제15조 제1항, SIAC 중재규칙 제19조 제1항, JCAA 중재규칙 제11조 제1항이 있다. CIETAC 중재규칙의 경우에는 중재기관에서 중재언어를 결정하도록 한다(CIETAC 중재규칙 제71조 제1항).

55) KCAB 국제중재규칙상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과 협의한 후 중재 진행을 위한 잠정적인 일정표를 별도의 서면으로 작성하여 중재판정부의 구성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사무국과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기고 있는데, 이것이 ICC 중재규칙 등에서 인정되고 있는 예비절차라고 보기에는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 SIAC 중재규칙의 경우 예비절차를 명시규정으로 마련해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5. 심리절차

KCAB 국제중재규칙 역시 심리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중재판정부가 심리절차를 전적으로 관장하며 절차진행을 운용할 재량권을 가진다(KCAB 국제중재규칙 제26조 제1항). 예컨대, 증인신문방식이나 심리절차의 중지·재개 여부는 전적으로 중재판정부의 권한이다.

KCAB 국제중재규칙상 이러한 심리절차는 당사자들의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비공개가 원칙이며(KCAB 국제중재규칙 제26조 제4항),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진술할 적절한 기회를 부여 받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리절차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한다. 심리 종결 이후에는, 중재판정부가 요청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 서면이나 주장, 증거를 제출할 수 없다(KCAB 국제중재규칙 제27조 제1항).

BANI 중재규칙의 경우에도, 중재판정부가 폭넓은 심리절차 진행의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KCAB 국제중재규칙과 유사하다.<sup>56)</sup> 또한 양 규칙상 영미법상의 폭넓은 문서제출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비슷하다.

## 6. 중재판정

중재판정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중재판정의 형식심사이다. KCAB 국제중재규칙의 경우, 중재판정의 형식적 심사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BANI 중재규칙의 경우에도 이러한 판정문 형식심사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그러나 최근의 국제적인 중재실무로는 판정문 검토절차라고 하는 형식심사절차가 엄격하게 강화되어, 중재인들의 실수로 불완전한 판정이 내려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추세에 있다.<sup>57)</sup> 예컨대, ICC 중재규칙,<sup>58)</sup> SIAC 중재규칙,<sup>59)</sup> CIETAC 중재규칙<sup>60)</sup>들은 이와 관

56) 한편 ICC 중재규칙의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일방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당사자들을 직접 신문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요구가 없을 때에도 중재판정부의 직권으로 당사자 신문절차를 결정하도록 한다.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그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즉, 중재판정부는 심리절차를 전적으로 관장하며, 모든 당사자는 심리에 참석할 자격이 있다. 해당 중재와 관련 없는 사람은 중재판정부와 당사자의 승인 없이는 심리에 참석할 수 없다(ICC 중재규칙 제25조 제2항·제3항). UNCITRAL 중재규칙은, 당사자가 구두심리신청을 특별히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판정부가 서면심리 또는 구두심리의 절차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UNCITRAL 중재규칙 제17조 제3항).

런한 형식심사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

둘째, 중재판정의 시기이다. KCAB 국제중재규칙상, 중국판정은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 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최종 서면의 제출일과 심리의 종결일 중 가장 마지막의 날짜로부터 45일 이내에 판정을 내려야 한다(KCAB 국제중재규칙 제33조 제1항). 반면에 BANI 중재규칙에 따르면, 당사자들의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중재판정은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후 180일 이내 및 최후 심리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 점에서 KCAB 국제중재규칙과 시기적인 차이가 있다.<sup>61)</sup>

셋째, 중재판정의 오류 정정 및 추가판정에 관한 기간이다. KCAB 국제중재규칙의 경우, 중재판정부는 판정 후 30일 이내에 판정문의 오기, 오산, 오타 등의 오류를 당사자들의 요청 또는 중재판정부의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KCAB 국제중재규칙 제36조). 또한 당사자들은 중재판정 후, 30일 이내에 판단되지 않은 청구에 대한 추가판정을 신청할 수 있고 중재판정부는 신청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추가판정을 내려야 한다(KCAB 국제중재규칙 제37조).

반면에 BANI 중재규칙의 경우, 중재판정에 오류가 있거나 특정 쟁점에 관하여 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중재판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BANI에 중재판정의 정정·추가판정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KCAB 국제중재규칙과는 중재판정의 정정·추가판정 신청의 기간적 차이가 있다. 또한 BANI 중재규칙은 오류정정 기간이나

57) 이러한 중재기관의 판정문 형식심사가 중재판정부의 실질적 판단에 대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중재판정문에 불명확한 점이 있거나, 계산상의 착오 등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또는 판정문 형식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을 지적하여 수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뿐이다(김갑유, 전제서, p.230).

58) ICC 중재규칙의 경우에는 ICC 자체의 중재판정문 엄격한 형식심사 규정이 있는 바, 중재판정부는 판정문에 서명하기 전에 판정문 초안을 ICC 중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중재법원은 제출된 판정문의 형식을 수정할 수 있고, 실제적 쟁점에 관한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ICC 중재규칙 제33조). 즉, ICC 중재는 중재판정의 형식에 대해 중재법원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 중재판정을 내릴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59) SIAC 중재규칙의 경우에도 중재판정부는 모든 종류의 중재판정을 내리기 전, 중재절차의 종료를 선언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사무국에 판정문 초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사무국은 가능한 신속하게 판정문 형식에 대한 수정을 제안하거나 중재판정부의 판단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실제적 쟁점에 대하여도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중재판정부가 그 형식에 관하여 사무국의 승인을 얻기 전까지는 판정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이다(SIAC 중재규칙 제28조 제2항). 즉, 사무국은 중재판정에 대한 강제적인 보정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중재판정의 형식적 심사과정에서 최종 승인을 함으로써 해당 판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60) CIETAC 중재규칙의 경우에도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문의 초안을 CIETAC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CIETAC 중재규칙 제49조).

61) 예컨대, ICC 중재규칙의 경우에는 중재위탁요지서가 강제되고 있으므로, 중재판정부나 당사자가 이러한 중재위탁요지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종적인 중재판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규정하도록 한다(ICC 중재규칙 제30조 제1항). CIETAC 중재규칙의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고 있고(CIETAC 중재규칙 제46조 제1항), SIAC 중재규칙도 이와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다(SIAC 중재규칙 제39조 제1항). JCAA 중재규칙은 중재절차 종료일로부터 5주간 이내 또는 사안이 복잡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8주간 이내로 정하고 있고(JCAA 중재규칙 제53조 제1항), KLRCA 중재규칙은 중재절차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중재판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한다(KLRCA 중재규칙 제11조 제1항). VIAC 중재규칙의 경우 BANI 중재규칙과 유사하게 중재절차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규정한다(VIAC 중재규칙 제30조 제3항). HKIAC 중재규칙의 경우 이러한 중재판정의 시기에 관해 명문의 규정이 없다.

추가판정 기간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넷째, 중재판정의 등록에 관한 부분이다. KCAB 국제중재규칙은 중재판정의 집행을 위한 법원 등록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 반면에 BANI 중재규칙은 중재판정의 집행을 위해서는 관할법원에 등록되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재판정의 등록을 세 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BANI 중재규칙의 특징 중 하나이다.

## 7. 기타

BANI 중재규칙이 신속절차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KCAB 국제중재규칙은 제38조부터 제44조에서 신속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두고 있다.

KCAB 국제중재규칙상 신속절차 개시의 요건으로, ① 신청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② 당사자 사이에 이 장에서 정한 신속절차에 따르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바,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KCAB 국제중재규칙 제38조). 만약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사무국이 국제중재인명부 중에서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KCAB 국제중재규칙 제40조 제1항). 즉, 신속절차에서도 단독중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sup>62)</sup> 신속절차의 판정은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sup>63)64)</sup>

한편 KCAB 국제중재규칙은 긴급중재인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데, BANI 중재규칙의 경우도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다.<sup>65)</sup>

62) 다만 당사자들이 3인 중재에 합의한 경우, 사무국은 당사자들에게 단독판정부에 의할 것을 합의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KCAB 국제중재규칙 제40조 제2항).

63) KCAB 국제중재규칙 제43조 제1항. KCAB 사무국은 중재판정부의 요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판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4) ICC 중재규칙의 경우, 중재규칙 부칙 IV(Appendix IV)에 신속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신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SIAC 중재규칙 역시 구체적인 신속절차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 즉, 중재판정부가 완전히 구성되기 전, ① 총 분쟁금액이 5,000,000 싱가포르 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는 경우, ③ 극히 예외적으로 긴급한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속절차가 인정된다. SIAC 중재규칙상 신속절차는 중재판정부 구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규정한다(SIAC 중재규칙 제5조 제1항·제2항). HKIAC 중재규칙의 경우에도 ① 총 분쟁금액이 25,000,000 홍콩 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는 경우, ③ 극히 예외적으로 긴급한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속절차가 인정된다. HKIAC 중재규칙상 신속절차는 분쟁의 사건기록이 중재판정부에 송부된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HKIAC 중재규칙 제41조). CIETAC 중재규칙, JCAA 중재규칙 및 KLRCA 중재규칙 역시 구체적인 조건에 의한 신속절차 규정들을 마련해 두고 있다(CIETAC 중재규칙 제54조 제1항·제60조 제1항; JCAA 중재규칙 제75조·제81조; KLRCA 중재규칙 제12조 제4항·제5항).

65) 최근 상당수의 중재기관들이 이러한 긴급중재인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는 바, ICC 중재규칙은 ICC 중재규칙 부칙 V(Appendix V)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고, SIAC 규칙도 이와 유사한 긴급중재인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이외에도 HKIAC 중재규칙, JCAA 중재규칙 및 KLRCA 중재규칙도 긴급중재인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표2: 중재절차의 비교)

	KCAB 국제중재규칙	BANI 중재규칙
중재의 개시	중재신청서를 KCAB 사무국에 제출	중재신청을 BANI에 제출 및 등록
답변서	중재신청서 수령 후, 30일 이내	중재요청서 수령 후, 30일 이내
반대신청	답변서와 동시에	최초 심리기일 전까지
중재인 수	단독중재가 원칙	BANI 위원장이 결정
중재인 자격요건	특별히 없음	총 6가지의 자격제한 사유
		BANI 중재규칙상 분쟁 실체의 준거법이 인도네시아법으로 지정된 경우, 인도네시아법을 숙지하고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중재인 최소 1인을 선정
중재인 선임절차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만 KCAB 사무국이 선임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는 경우라도 BANI 위원장에 의해 거부 가능
중재인 기피절차	15일 이내에 제기	14일 이내에 제기
중재언어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결정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 인도네시아어가 원칙
중재판정의 형식심사	없음	없음
중재판정의 시기	최종서면 제출일과 심리 종결일 중 나중의 날짜로부터 45일 이내	중재판정부 구성일로부터 180일 이내 · 최후 심리기일로부터 30일 이내
중재판정의 정정 · 추가판정	중재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요청	중재판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요청
	정정기한은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추가판정기한은 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정정기한 및 추가판정기한에 관한 규정 없음
중재판정의 등록	없음	있음
신속절차	있음	없음
긴급중재인제도	없음	없음

## V. 결 론

현재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적인 불황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가 급증하는 주요 투자 대상국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7, 8번째 수준의 교역상대국 지위를 점하고 있고, 2020년이 되면 한국-인도네시아간 무역규모가 1,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sup>66)</sup>

66) 김유미, “최근 대(對)인도네시아 외국인직접투자의 급증 원인과 시사점”, 「KIEP 지역경제 포커스」, Vol.6,

향후 인도네시아와의 경제협력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들의 투자확대전략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른 인도네시아 법제의 검토 역시 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상사분쟁과 관련한 인도네시아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연구도 당위적이라 할 수 있겠는데, 아직 이에 관한 논의의 전개는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취지하에 본고에서는 인도네시아 국립중재위원회(BANI)의 중재규칙을 중심으로 중재절차의 구조적 측면을 분석해 보았다. 나아가 BANI 중재규칙과 KCAB 국제중재규칙을 비교·검토하여, 몇 가지 실무적 유의점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하 다음과 같은 점들이다.

첫째, 중재신청과 그에 대한 피신청인의 반대신청 제기기한과 관련하여, BANI 중재규칙은 최초의 심리기일 전까지 반대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의 국제중재실무에서는 피신청인의 반대신청이 답변서와 동시에 제출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KCAB 국제중재규칙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동시제출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반대신청을 BANI 중재규칙에서와 같이 심리기일 이전까지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중재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된 심리기일 직전에 반대신청이 제기됨으로써 중재절차가 상당히 지연될 우려가 있다.

피신청인의 반대신청을 답변서 제출과 동시에 제기하도록 하여, 중재절차의 혼선을 방지하고 기회주의적인 절차진행을 차단하는 것이 주류적인 국제입법추세라고 본다면, BANI 중재규칙의 태도는 국제적 정합성 확보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인도네시아중재법제상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둘째, 중재인 자격과 관련하여, BANI 중재규칙은 자체적인 제한사유를 마련해 두고 있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BANI에 등록된 중재인 패널 중 중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BANI 중재규칙은 분쟁 실체의 준거법이 인도네시아법으로 지정된 경우, ① 인도네시아법에 정통하고, ② 인도네시아에 거주 중인 중재인 1인을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반면에 KCAB 국제중재규칙의 경우에는 이러한 중재인 선정의 제한 규정들을 정하고 있지 않다.

중재판정부 구성절차가 전체적인 중재절차상 가장 중요한 단계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재인 자격의 제한요건들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 BANI 중재규칙의 태도는 그 국제적 활용도에 있어 장벽이 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중재인 선정절차와 관련하여, BANI 중재규칙은 당사자가 아닌 BANI 위원장에게 중재인 선정의 최종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만약 당사자 쌍방이 중재인 선정에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BANI 위원장의 재량에 따라 해당 중재인 선임이 거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른바 독소조항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BANI 중재규칙상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 즉, BANI 위원장이 중재인 선정에 관한 배타적인 권한을 보유함으로써 당사자 자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중재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원리인 당사자 자치의 원칙이 그 판단주체선정에 있어서의 자치성(autonomy) 확보에 있는 것이라면, BANI 중재규칙의 이와 같은 입장은 중재제도의 본질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BANI 중재규칙을 활용하는 경우, 이에 관한 실무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넷째, 상기의 문제 이외에도 BANI 중재규칙은, ① 중재판정의 등록을 필요로 한다는 점, ②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절차의 언어로 인도네시아어가 지정된다는 점, ③ 근래에 보편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신속절차나 긴급중재인제도가 없다는 점 등의 문제들이 있다.

중재기관이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재지의 국제성, 중재언어의 국제성, 중재인의 국제성, 중재법규의 국제성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적 인프라를 구성하는 중재법규의 국제성이다. BANI 중재규칙이 전반적인 국제적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중재법규의 국제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BANI 중재규칙을 이용하는 당사자들 역시 앞서 언급한 문제들을 주지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 중재절차에 임해야 할 것으로 본다.

## 참고문헌

- 김갑유, 『중재실무강의』, 박영사, 2012.
- 김상찬, “ADR제도의 비교법적 연구 - 아시아의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 『중재연구』, 제19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09.
- 김·장 법률사무소, 『APEC 개발도상국 법제지원을 위한 인도네시아 계약분쟁해결절차 연구』, 김·장 법률사무소, 2011.
- 김태훈·차경자, “대한상사중재원(KCAB) 중재규칙의 최근 개정내용에 관한 고찰”, 『중재연구』, 제22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2.
- 목영준, 『상사중재법』, 박영사, 2011.
- 박원형,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의 개정 동향 - ICC 중재규칙의 개정과 비교하여 -”, 『중재연구』, 제22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2.
- 석광현, 『국제민사소송법』, 박영사, 2012.
- \_\_\_\_\_, “대한상사중재원의 2007년 국제중재규칙의 주요내용과 그에 대한 평가”, 『법학연구』, 제49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 최환용, “인도네시아의 사법제도와 소송외 분쟁해결제도”, 『아시아법제연구』, 제7호, 한국법제연구원, 2007
- 山本和彦・山田文, 『ADR仲裁法』, 日本評論社, 2008.
- 栗田哲郎 (編), 『アジア國際商事仲裁の實務』, レクシスネクシス・ジャパン, 2014.
- Born, Gary B.,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3rd Edi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2009.
- Caron, David D. and Caplan, Lee M., ed.,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A Commentary*, Oxford University Press, 2nd ed., 2013.
- Greenberg, Simon, *et al.*,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n Asia-Pacific Perspectiv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 McIlwrath, Michael and Savage, John,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Mediation : A Practical Guide*, Kluwer Law International, 2010.
- Weigand, Frank-Bernd, ed., *Practitioner's Handbook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 Mills, Karen and Rakhmat, Ilman F., *Arbitration Guide: Indonesia*, IBA Arbitration, 2013.
- Michael J. Moser, ed., *Arbitration in Asia*, 2nd Ed., Juris Pub., 2008.
- Pryles, Michael, ed., *Dispute Resolution in Asia*, Kluwer Law International; 3rd Ed., 2006.
- Sukirno, Timur and Soesabdo, Hendronoto, *Arbitration in Indonesia*, Hadiputranto, Hadinoto & Partners 2011.

## ABSTRACT

### A Review on the Arbitral Proceeding under Rules of Arbitral Procedure of the Indonesia National Board of Arbitration (BANI)

Young-Ju Ki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the arbitral proceeding system in Indonesia. Arbitration in Indonesia is governed by Law No. 30 of 1999 on Arbitration a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rbitration Law). Also, the Indonesian National Board of Arbitration (BANI) is the main arbitration body in Indonesia. BANI handles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disputes.

BANI has published its Rules of Arbitral Procedure (the BANI Rules). Within a period of not longer than 30 days after receiving the petition for arbitration, the respondent must submit its reply. Also, if the respondent wishes to assert against the claimant a counter-claim in connection with the dispute, the respondent may submit such counter-claim together with its statement of defense no later than the first hearing.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following may be some of the disadvantages to using arbitration under the BANI Rules.

The first is that final decision or approval regarding the designation of all arbitrators shall be in the hands of the Chairman of BANI. It is the chief problem facing the international stream of arbitration systems.

The second is that arbitrators must have certain minimum qualifications. BANI Rules provide the same requirements for the qualifications of the arbitrators as the Arbitration Law.

The third is that the BANI Rules require arbitrators in BANI-administered references to be chosen from BANI's list of arbitrators. BANI can also consider a recognized foreign arbitrator if the foreign arbitrator meets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s and is prepared to comply with the BANI Rules. This includes the requirement that the appointing party must bear the travel, accommodation, and other special expenses related to the appointment of the foreign arbitrator.

**Key Words** :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rbitration in Indonesia, The Indonesia National Board Of Arbitration (BANI), BANI Arbitration Rules, KCAB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the Arbitral Procedure